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02 | December 2022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소득법인세 분야

2

- [판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그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서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과다 환급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재산소비세 분야

7

- [판례]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예규]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예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예규]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 [예규]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지방세 분야

11

- [판례]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국승)
- [심판례]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세 분야

14

- [판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수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납세자승)

소득법인세 분야

[판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그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서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과다 환급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사안] 중소기업인 A사는 2006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였고,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음(“이 사건 환급세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6. A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함(A사와 원고를 구분함이 없이 이하 “원고”). 원고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A사에게 이 사건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이 사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판단]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당초의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에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소 등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재결정한 후 과다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됨. 구 국기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이미 총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환수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수는 그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액의 계산방법, 환수절차 등에서 서로 구분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으로 보아야 함.

[TKC 코멘트]

- 대상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본 결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통상의 제척기간(5년)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2017. 12. 19. 국세기본법 개정 시 2개월의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신설되어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짐(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제4호).

[심판례]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각)

조심 2021구6923, 2022. 12. 6.

[사안] 청구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80%를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지주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7. 10. 25.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1. 20. 청구법인에게 “2016. 12. 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말 기준 지주회사가 아님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률조항은 그 주체를 “내국법인 중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지주회사”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이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문구를 청구법인이 달리 해석한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심판례는 청구법인이 2017년에 지주회사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외 사유가 발생한 2016사업연도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 한편,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은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성립 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37092 판결).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22서5396, 2022. 11. 30.

[사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미국 외 7개국 소재 회사들(“자회사들”)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사(“모회사”)가 중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자매회사”, 자회사들과 자매회사를 합하여 “해외자회사 등”)에 2016 ~ 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주재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쟁점주재원들”)을 파견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하였음.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쟁점주재원들을 파견한 것을 사실상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한 그룹내 ‘저(低)부가가치 용역공급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재원들의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이 정상가격(적정수수료)임을 전제로 여기에 해외자회사 등이 기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2016 ~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자회사 등을 관리·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상 필요에 따라 쟁점주재원들이 파견되어 해외자회사 등의 영업실적, 목표관리계획 및 재무·인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청구법인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재원들이 수행한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 관리규정(미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재원들에 대한 일정한 관리·감독책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재원들의 업무 중 청구법인 관련 비중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쟁점주재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 등 간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과의 쟁점주재원들의 인건비 분담을 통해 분식회계나 이익분여 등의 조세포탈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재원들의 인건비의 1.05배에 상당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서7379·7380(병합), 2021. 10. 26. 등, 같은 뜻임].

그러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쟁점주재원들은 주로 해외시장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해외자회사 등의 재무·회계·인사 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에 프로모션 기획, 부품 구매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 달리 해외자회사 등의 핵심사업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쟁점주재원들이 해외자회사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저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해외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인건비가 정상가격에 상당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서6907, 2022. 12. 13.

[사안] 청구인 A 외 6명(“청구인들”)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자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7. 1. 6.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각 부여받아 2020. 4. 8.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음. 조특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조특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2020. 4. 8.)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청구인들은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기한(2020. 4. 8.)을 경과하여 쟁점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등을 해당 기한(2020. 5. 10.)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제출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1년 7월 처분청에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거부함.

[판단]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개[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입고 후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도록 한 조특법 제1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 규정은 최소한 지정기한 내 납세자의 특례적용 신청 등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과세방식을 확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나 세부담 효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에 미리 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절차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핵심적인 관리방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4에서 정한 제반절차는 단순 납세자의 협력의무라기 보다 쟁점과세특례 규정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TKC 코멘트]

• 서류의 제출이 과세특례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조특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님(재재산-340, 2004. 3. 15.).
- 구 조특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준비금”)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6, 2010. 3. 9.).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적용 시 동법 제2항에 의한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협력의무에 불과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판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동법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규정은 협력의무에 불과함(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서류의 제출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판단한 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2부5861, 2022. 8. 23.).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 조특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과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함(수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 16272 판결).
- 조특법 제121조의 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시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증자시마다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조세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9427 판결).

[예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사전-2022-법규법인-0949, 2022. 11. 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 제2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정하고 있음.
-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된 대손금의 경우 그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확립된 과세실무의 태도임(대전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24 판결; 조심2017중3715, 2018. 2. 2.; 기획재정부 법인-400, 2009. 5. 7.).
- 하지만, 최근의 국세청 입장은 결산조정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즉,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사전법령해석법인2021-218, 2021. 5. 25.), 대손확정 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결산 반영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봄(위 사전답변2022-0949 해석).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사안]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주)셀트리온홀딩스와 (주)셀트리온지에스씨를 통하여 (주)셀트리온(“셀트리온”)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주)셀트리온헬스케어(“헬스케어”)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였는데, 셀트리온은 2012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하였고(“이 사건 거래”),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거래 매출액이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56%와 98.65%에 해당함. 원고는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3 제1항 등에 따라 자신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2012. 12. 31. 및 2013. 12. 31. 헬스케어로부터 일정한 이익(“이 사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등이 ‘지배주주’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상법상 ‘주주’의 의미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무자에 해당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 45조의 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증여의 제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TKC 코멘트]

- 위 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얻게 된 이익은 자기가 자기에게 분여한 이익(자기증여, 자기이익분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배척한 판단부분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음(2017두66244 판결에서는 “법인의 주주가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더라도 그 자산 자체를 주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구체적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음).
- 한편, 위 대상판결 사안 이후인 2014. 2. 2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제3호), 위 대상판결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심판례]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조심 2022중2382, 2022. 11. 29.

[사안] 청구인은 A사(코스닥 상장법인), B사 C사, D사 등으로 구성된 甲그룹의 회장이자 A사 등기이사 겸 B사 및 C사의 대표이사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2010. 8. 5. ~ 2010. 9. 3. 기간 중에 F 외 4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수한 A사 발행주식을 2010. 9. 28. ~ 2010. 9. 30. 기간 중에 전부 장내 매도함으로써 차익(“쟁점금액”)을 취득하여 법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을 선고받았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중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사 주식(“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전부 장내매도한 거래로 얻은 단기매매차익(“쟁점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양도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중 양도일 현재 대주주 요건(지분율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은 A사의 임원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거래로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주식매매차익 상당액을 그 법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 간접 규제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장내 주식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점,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을 뿐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단기매매차익 상당액의 반환도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해당 이익의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은 청구인이 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을 증권(코스닥)시장을 통해 매수·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해당 매매차익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원인급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외유출금액은 소득처분 받은 자의 개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달리, 이 건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위법소득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예규]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 11. 18.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쟁점거래"),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7. 2. 23.).
- 한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1013, 2011. 8. 30.).

[예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총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8, 2022. 10. 27.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에는 총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예규]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2022. 11. 7.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는 포함되지 않음.

[TKC 코멘트]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인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함(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2항).

[예규]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서면-2021-법규재산-4596, 2022. 11. 10.

상증세법 제4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특수관계 있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예규]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 11.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것이고,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간주하며(상증세법 제39조 제2항), 여기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함(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지방세 분야

[판례]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사안]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 사건 체납관리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위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판례]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국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사안] 원고는 2013. 7. 26. B사(“소외 회사”)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특법(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한 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2016년 4월 무렵부터 사용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사용가능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6지0878, 2017. 5. 2.; 조심 2018지0220, 2018. 11. 16.).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판례]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2지0487, 2022. 10. 26.

[사안] 청구법인은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쟁점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21. 5. 7.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른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2021. 5. 8.)부터 총당일(2021. 7. 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선 지급한 후, 2021. 7. 8. 지급결정하였음.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함에 따라 환급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청구일의 다음 날(2021. 5. 8.)부터 총당일(2021. 7. 1.)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없음.

[TKC 코멘트]

- 2021. 12. 28.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로 개정함(해당 제6호 삭제).
- 국세의 경우, 2015. 2. 3. 시행령 개정 시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하였으나(구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5호), 2021. 2. 17. 시행령 개정 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위 제5호 삭제). 결국,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하게 됨(납부일).

[예규]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지특법 제1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 분야

[판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수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납세자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사안] 제약회사인 H약품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AMANO ENZYME INC.(이하 '아마노'라 한다)와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Streptokinase) 및 스트렙토도르네이스(Streptodornase)(이하 'SKSD'라 한다)를 단위(BU)당 1,187,500원에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3차례에 걸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SKSD에 관하여 단위(BU)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함. 처분청인 서울세관은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 12. 16.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함.

[판단] 구매수량이 연간 1,688BU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음.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TKC 코멘트]

- 연간 구매계약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최초로 실시한 판례라 할 수 있음.
- 즉, 본 판례는 명목상 '무상' 물품이라도 그 실질이 유상구매와 같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임.
- 실무적으로 계약에 따라 구매한 금액 또는 수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수량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에 포함된 것이므로 총 금액을 총 수량으로 안분한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 적절한 과세가격이 될 것이며 무상물품 과세가격 판단 시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